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남해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 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고, 동 규정 별표2의3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과장·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두되, 시나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군의 경우에는 소장은 4급, 과장·담당관은 5급,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군의 경우에는 5급)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 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구 및 정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남해군의 경우 제16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농촌진흥기구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서*를 설치하는등 상기 법령을위반하였다.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 산림공원과

조치할 사항

남해군수께서는

지방농촌진흥기구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5급 이상 정·현원 불일치

기관명 남해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해야 하고,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원에 부합하게 현원을 배치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및 산하 시·군의 5급 이상 직위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점검한 결과 13개 자치단체에서 정·현원 간 직렬 불일치 등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위반사항 : 붙임)

조치할 사항

남해군수께서는

정원과 현원이 부합하지 않는 직위에 대하여 정원 재책정 또는 정원에 부합하는 현원 배치 등 적절한 개선이 요구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전부

개선권고

제 목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효율화 도모 노력 미흡

기 관 명 남해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효율화 및 주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 기능·인력 재배치 기준 >

- ① (기능) 지원기능,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으로 재배치
* 예시 : 도시개발·산단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 지역별 특화 역점과제·국제행사 등 지역현안 분야, 주요 국정과제 또는 법령에 따른 신규 인력소요 분야
- ② (현장) 본청 또는 감독부서에서 **읍면동, 일선 서비스 현장**으로 재배치
- ③ (서비스 편차) 인력 부족으로 안전·복지 등 **행정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있는 **현업부서 또는 읍면동**으로 재배치
- ④ (근로시간) 공직내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적정 배치**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의 1% 이상을 재배치 대상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재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속해서 2년 이상 목표치 미만 실적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 기능·인력 재배치 미흡 사례 >

연번	지자체명	재배치 달성률(%)			비고
		'19년	'20년	'21년	
1					
2	경남 남해군	0.33	-	0.76	2년이상 1%미만
3					
4					

조치할 사항

남해군수께서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 분야의 인력을 일선 현장 및 신규 핵심사업 분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경상남도 및 관할 시·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남해군

내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15.9월~)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16~’22년)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통보한바 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세부 정비방안으로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 후 실효성, 안건 특성 등에 따라 위원회 폐지, 통폐합, 협의체 전환 등을 실시할 것을 안내하였다.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4.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5. 비상설화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기와 같이 정비하여야 하나, 일부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례·규칙 개정 등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남해군수께서는

상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에 부합하도록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전부

개선권고

제 목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기구·정원 현황 등 지방의회 제출 미흡

기 관 명 남해군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영계획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인력운영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동 규정 제4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제출 대상·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9년)을 통해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매년 12월)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조직 운영토록 안내한 바 있다.

❖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 (「기구정원 규정」 제40조 및 '19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편집)

-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경상남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기구정원 운영현황, 자체 조직진단 결과 등을 최근 3년간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일부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위반사항 : 붙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상남도 및 산하 시·군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보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남해군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내실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